#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02

발의연월일: 2025. 3. 24.

발 의 자:조인철・박지원・이개호

문진석 • 주철현 • 정진욱

이해민 • 안도걸 • 박용갑

위성곤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문화소외계층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문화예술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외'라는용어가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적 표현에서 종종 사용되고 있으므로 '문화소외계층'을 '문화취약계층' 등의 다른 표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들이 최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들을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소외계층을 문화취약계층으로 재정의하고 문화취약계층의 범위에 청년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 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 등).

법률 제 호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문화소외계층이"를 "문화취약계층 또는 청년이"로 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중 "문화소외계층의"를 "문화취약계층의"로 하고, 같은 조 중 "문화소외계층의"를 "문화취약계층 또는 청년의"로 한다. 제15조의4제1항 중 "문화소외계층에게"를 "문화취약계층과 「청년기본 법」 제3조에 따른 청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게"로 한다. 제18조제8호 중 "소외계층의"를 "문화취약계층의"로 한다. 제38조제5항제6호 중 "소외계층"을 "문화취약계층"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①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	4문화취
<u>계층이</u> 공연·전시·영화·도	<u>약계층 또는 청년이</u>
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	
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	
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 <u>문화소외계층의</u> 문화	제15조의3( <u>문화취약계층의</u> 문화
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	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u>문화소외계층의</u> 문화예술	-문화취약계층 또는 청년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	
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	
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기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수 있다.

#### ② ~ ⑤ (생 략)

-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기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 1. ~ 7. (생략)
  - 8. 장애인 등 <u>소외계층의</u> 문화 예술 창작과 보급
  - 9. · 10. (생략)
- 제38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7
  - ① ~ ④ (생 략)
  - ⑤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 5. (생략)
  - 6.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한 소외

•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문화취약계
층과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 중 대통령령으로 정
<u>하는 청년에게</u>
<u>.</u>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1. ~ 7. (현행과 같음)
8 <u></u> 문화취약계층의
9. • 10. (현행과 같음)
제38조(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5
1. ~ 5. (현행과 같음)
6문화

계층 대상 공연활동 지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 업

7. (생략)

⑥ ~ ⑧ (생 략)

취약계층

7.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